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 문화체육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되,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9제2항).
- 문화체육부장관은 징계요구, 권고 등 조치요구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체육단체의 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제3항).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함(안 제17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II. 검토의견

1.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 규정 보완(안 제2조제11호의3)

안 제2조제11호의3에서는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례¹⁾ 등을 참고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대상 및 유형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u>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u>	제2조(정의) ----- -----.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 ----- <u>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u>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	--

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산업의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후단)

현행법 제17조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종사업, 체육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대리와 관련된 업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7조제3항은 현행법과 달리 융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여 자금 융자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보완한 수정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생 략)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③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 음----- ----- ----- ----- ----- ----- <u>-----국민체육진흥기</u> <u>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u> <u>에서 그-----</u> -----.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 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생략)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현행과 같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 절차 및 징계 기준 보완(안 제18조의9제3항·제6항)

안 제18조의9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체육단체의 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 대상에는 징계요구 외에 권고, 시정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조치요구와 재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문에 관련 내용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고받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와 재조치요구를 할 수 있음을 본문에 원칙으로 규정하되, 단서에 재징계요구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문을 정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수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⑥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⑥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중징계 :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 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 감봉, 견책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부칙 안 제5조)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5조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25조제1항의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되,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없이 해당 사무를 주식회사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 제25조제1항²⁾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함)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주식회사를 “수탁사업자”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으

2)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므로 이에 따라 부칙 안 제5조에서 주식회사로 규정한 부분을 수탁사업자로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즉, 수탁사업자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문을 보다 명확히 한 수정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
제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5조제1항의 <u>주식회사</u> 가 설립되기 전까지 <u>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관한 사무</u> 를 처리할 수 있고, <u>주식회사</u> 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없이 해당 사무를 <u>주식회사</u> 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u>수탁사업자</u> 가 설립되기 전까지 <u>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u> 를 처리할 수 있고, <u>수탁사업자</u> 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없이 해당 사무를 <u>수탁사업자</u> 에 인계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할 결과,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화 실)